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 나. 의안번호: 제449호
- 다. 발의일자: 2023. 2. 2.
- 라. 회부일자: 2023. 2. 9.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교육의 정의에 어린이집을 명확히 명시하여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환경교육' 및 '학교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2 신설).
- 나.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본문 및 별지서식 인용조문 수정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일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④ (생략)

[제목개정 2022. 6. 10.]

1) 상위법 개정 동향

- 「환경교육활성화법」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시행일 '22.1.6)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가능 나이가 일부 겹치고(만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담당 역할 등이 유사하여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 환경교육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양적·질적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동 법을 개정(일부개정 '22.6.10)한 바 있음.

2) 검토의견

- 안 제1조의2는 “환경교육”을 상위법과 같게 정의하고, “학교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임.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9조제5항은 상위법령의 제목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활성화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과 제6조 및 제9조제1항 등은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또한 동 조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는 현재 「환경교육활성화법」 제2조의3(사회환경교육)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7조(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에는 에너지수호천사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132개소의 4,036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 6,854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